

제25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6.25.)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제출자 : 2021. 5. 31./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21. 6. 1.
- 상정일자 :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6.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규섭 재무과장, 장봉기 수도사업소장, 권해도 기획예산담당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른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을 의결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세입·세출 결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A)	세 출 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A-B)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797,976	619,625	178,351	43,515	36,450	16,984	5,396	76,006
일반회계	724,028	570,569	153,459	43,515	34,665	14,743	5,343	55,194
특별회계	73,948	49,056	24,892		1,785	2,241	53	20,812

○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 총괄은

- 수납액은 797,976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619,625백만원으로
- 결산상 잉여금은 178,351백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은 43,515백만원이며,
- 사고이월은 36,450백만원이고
- 계속비이월은 16,984백만원으로,
- 보조금 집행잔액은 5,39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 순세계 잉여금은 76,006백만원임.

2)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789,070	802,767	797,976	1,058	3,733	101.1	99.4
일반회계	714,781	727,930	724,028	1,058	2,843	101.3	99.5
특별회계	74,289	74,837	73,948		890	98.2	98.8

○ 2020년도 실제 수납액은 797,976백만원으로서

- 징수결정액 대비 99.4%이며,
- 미수납액 3,73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4%임.

3)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보조금 반납액 (F)	집행잔액 G=C-D-E-F
계	683,514	105,555	789,070	619,625	96,949	5,267	67,228
일반회계	616,639	98,141	714,781	570,569	92,923	5,214	46,074
특별회계	66,875	7,414	74,289	49,056	4,026	53	21,154

○ 2020년도 총지출액은 619,625백만원으로서

- 예산현액 798,070백만원 대비 78.5%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96,949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2.2%이며
- 집행잔액 67,228백만원은 예산현액의 8.5%임.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이 용(일반회계) : 해당사항 없음

전 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용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16건	3,526	334	334	

이 체(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체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3건	16,154	16,154	

심 사 의 견

□ 전 용(일반회계)

-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여건 변화, 사업의 일부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는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산의 변경·전용을 실시하는 것은 당초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그쳐야 하며,
- 의회의 심사도 거치지 않고 시행되는 사업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예산성립후에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경을 통하여 증·감조정후 집행할 것 결산검사에서 권고되었음.
- 직접 군내버스 임차, 일반보증인 수당지급, 소규모음악회 개최, 비대면 감염방지시스템 설치지원, 조사요원 인건비지급 등에 전용한 것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차후 전부서에서는 예산의 변경·전용시 상기 권고사항을 적극 참고하여 집행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 이 체(일반회계)

-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 지원관련 기간제근로자 사역, 사무관리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업무이관 추진된 사항으로 예산을 이체 승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계속비 결산(3권-결산서 부속서류 p378)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합 계	25,634	5,776	3,550	16,306
노인요양시설확충(신축)사업	1,084	14	1,070	0
문화관광자원개발-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전환	5,139	346	0	4,793
지자체자연휴양림-거창항노화자연휴양 림조성사업	3,428	757	0	2,670
거창자생식물원조성사업(전환)	812	245	0	567
빼재익스트림레저모험타운(전환)	400	113	287	0
신활력플러스사업	1,400	204	1,196	0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	96	94	0	1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9,053	1,871	0	7,182
권역단위종합개발	1,080	1,066	0	14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	69	57	0	13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	74	70	0	4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41	2	0	38
시군창의	115	38	0	77
취약지역개조(공항지구)	1,086	139	0	947
기초생활거점육성(가북면)	136	48	88	0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1,621	712	909	0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16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타당함.

6) 예비비 지출(결산서 p283)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조 직	단 위	세부사업				
합 계			10,524	5,051	3,744	1,729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활성화	다중이용시설 지원	77	70	0	7
안전총괄과	재 해 대 비	공공시설 재해 재난복구비	38	38	0	0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	789	789	0	0
건설과	소규모 지역개	공공시설 재해 재난복구비	389	378	11	0
인구교육과	교육여건개선	개항에 따른 코로나19 긴급대응	11	3	0	8
	교육여건개선	개항에 따른 코로나19 긴급대응	21	7	0	14
복지정책과	재 해 구 호	재해구호	15	14	0	1
안전총괄과	안 전 관 리	코로나19 대응	1,000	642	0	358
	재 해 대 비	7.28~8.11호우피해재난복구	600	599	0	0
	재 해 대 비	7.28~8.11호우피해재난복구	1,168	189	0	979
	재 해 대 비	태풍제9호 및 제10호 피해복구	170	169	0	1
	재 해 대 비	태풍제9호 및 제10호 피해복구	289	132	0	157
산림과	임 산 물 소 득 지 원	7.28~8.11호우피해재난복구	1,520	464	1,057	0
	산림생태보호	7.28~8.11호우피해재난복구	128	13	71	44
건설과	소 규모 지 역개	7.28~8.11호우피해재난복구	288	288	0	0
	소 규모 지 역개	7.28~8.11호우피해재난복구	1,425	377	1,048	0
	농업생산기반 시설 관리	7.28~8.11호우피해재난복구	134	21	69	43
	농업생산기반 시설 관리	7.28~8.11호우피해재난복구	180	85	92	3
	농업생산기반 시설 관리	7.28~8.11호우피해재난복구	290	190	0	100
	하 천 정 비	7.28~8.11호우피해재난복구	1,431	290	1,141	0
	도 로 관 리	7.28~8.11호우피해재난복구	379	160	219	0

		난복구				
도시건축과	과적한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60	47	0	13
거창군농업기술센터	과수산업 생산기반 조성	7.28~8.11호우피해재난복구	60	24	36	0
보건소	감염병 관리	7.28~8.11호우피해재난복구	62	62	0	1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건설과, 산림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호우피해 재난복구사업은 2020.7.28.~8.11 발생한 호우피해 재난복구관련 사업예산이며
- 경제교통과, 인구교육과, 복지정책과 개학에 따른 코로나19 긴급대응 사업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 보호와 교육여건 개선, 재난관리기금 전출과 관련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예비비 집행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긴급 목적 달성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7) 다음연도 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월액	비 고
계	257		98,260	
명 시 이 월	119	148,719	51,974	명시,사고이월 중복되는 사업있음
사 고 이 월	146	166,576	31,319	
계 속 비 이 월	26	21,655	14,967	

심 사 의 견

- 예산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기간 부족, 사전절차 이행,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위치 미확정,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됨.
- 이월 사유와 이월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사례로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집행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함.

8) 기금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㉑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㉒=㉑+㉓)
		계(㉒)=㉑-㉔	조 성 액(㉑)	사 용 액(㉒)	
계(8종)	173,380	△5,431	15,232	20,663	167,949
식 품 진 흥 기 금	147	△3	17	20	144
중소기업육성기금	6,540	△85	120	205	6,455
사 회 복 지 기 금	3,559	45	89	44	3,604
재 난 관 리 기 금	1,243	2,280	12,668	10,388	3,523
아름예술제진흥기금	501	8	8	0	509
옥외광고발전기금	309	31	31	0	340
체 육 진 흥 기 금	1,081	14	20	6	1,09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0,000	△7,721	2,279	10,000	152,279

심 사 의 견

- 2020년말 현재 기금은 8종으로써, 전년도 조성액 173,379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5,232백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20,663백만원을 공제한 167,948백만원임.
- 기금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함.

- 세입재원 중 보통교부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비비로 편성한 재정안정화 기금 1,600억원에서 일반회계로 100억원을 전출하여 세입이 부족한 때에 이를 충당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도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 기금은 조성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집행이 미미하므로 향후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함.

9) 채권액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잔 액
합 계	3,537,634	3,431,239	1,082,816	5,886,058
일반회계	3,516,547	75,239	18,382	3,573,405
기타특별회계	-	3,356,000	1,054,231	2,301,769
농업발전자금	-	3,356,000	1,054,231	2,301,769
기 금	21,087	-	10,203	10,884
사회복지기금	21,087	0	10,203	10,884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심 사 의 견

- 전년도 말 잔액은 3,537,634천원으로 당해 연도에 3,431,239천원이 발생하고, 1,082,816천원이 소멸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5,886,058천원임.
-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기금채권 10,884천원, 보증금채권 133,000천원, 융자금 채권 5,723,282천원으로 보증금채권은 회원권이고, 융자금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및 주택융자금임.

10) 채무액 결산

- 거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4년도부터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임.

11) 보조금 결산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321,494,718 (115,808,316)	329,242,213 (123,819,474)	280,177,158 (95,190,748)	37,478,978 (22,237,689)	11,586,078 (6,391,036)	
일반회계	305,366,894 (109,356,354)	313,129,313 (117,367,512)	264,558,293 (88,832,581)	37,102,538 (22,184,249)	11,468,485 (6,350,682)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30,000 -	30,000 -	29,600 -	- -	400 -
	농업발전자금	2,371,347 (1,688,547)	2,356,423 (1,688,547)	2,354,722 (1,688,547)	- -	1,700
	재난관리자금	9,742,648 (4,761,479)	9,742,648 (4,761,479)	9,539,539 (4,668,284)	133,600 (53,440)	69,509 (39,754)
	수질개선	3,983,829 (1,936)	3,983,829 (1,936)	3,695,004 (1,336)	242,840	45,984 (600)

※ 준비부담액은 123,819,474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하여 37.61%에 해당함

※ ()내서는 준비 부담액임.

심사의견

- 2020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329,242,213천원으로 예산액 321,494,718천원 대비 102.41%이고, 집행액은 280,177,158천원으로 예산액의 87.15%이며, 37,478,978천원이 이월되었음
- 일반회계 준비부담액은 123,819,474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비하여 37.61%에 해당됨.

전체심사의견

- 결산은 사후적인 관계로 집행된 예산의 내용을 무효로 하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효과는 없다. 결산을 통해서 집행부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이며,
- 결산은 1회계연도 동안 운영된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가 완료되어야 그 운영이 종결되므로 비로소 예산운영 주체에 대한 책임이 정치적, 행정적으로 해제되는 것임.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함.
- 또한 결산심사는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을 위한 지도, 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거창군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재정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성과 창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최대확보, 주민 참여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와 안전환경 조성으로,
-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신규사업은 자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고, 전략적 예산확보와 효율적 재원투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군정발전 전략추진, 지역경제 살리는 효율적인 재정회계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음.
- 2020년도 총 세입액은 797,976백만원, 총 세출액은 619,625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78,351백만원임. 세입대비 22.3%가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재정 계획과 자원 배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할 것임.

- 총 세입은 797,97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1,286백만원(9.2%)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248,035백만원(34.2%)이고, 보조금 210,572백만원(29.1%), 조정교부금 31,188백만원(4.3%), 지방세는 34,280백만원(4.7%), 세외수입은 21,783백만원(3.0%)으로 우리군 재정은 자체 재원(7.7%)보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67.6%)의 비율이 높은 편임.
- 세출은 619,62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3,975백만원(8%)이 감소하였으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128,517,596천원, 농림해양수산 115,520,237천원, 일반공공행정 53,401,304천원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이 금액이 감소된 것은 일반 공공행정이며, 재정안정화 적립금 152,278,879천원이 적립되어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20,373,611천원으로 286.7% 증가하였다.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서는 계획된 사업이나 시책들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잉여 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말 현재 기금 조성액으로 167,948,506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5,232,480천원이고,

- 사용액은 20,663,929천원으로 5,431,45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최근 5년간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약 12.7%p 낮은 편이며, 증가원인은 재정안정화 기금이 적립된 것이다.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은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을 재고하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중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481,334천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로서 징수방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4. 토론요지 : 해당없음

5.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